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손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26.

발 의 자 : 손 솔 · 전종덕 · 용혜인  
정혜경 · 윤종오 · 전진숙  
임미애 · 윤준병 · 김종민  
최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작 등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, 콘텐츠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.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권고에 그치고 있어,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. 또한 콘텐츠 제작 등 과정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 조치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.

이에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임금, 근로시간, 그 밖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

하고, 표준보수지침 마련, 콘텐츠사업자의 안전·보건 조치 의무 부과, 임금체불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8호, 제4조제3항, 제5조제3항제11호,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).

##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콘텐츠산업 종사자”란 콘텐츠의 제작·유통 등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 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5조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제24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사업자 또는 콘텐츠제작자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임금, 근로시간, 그 밖의

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제4장에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표준보수지침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적정한 보수(콘텐츠산업 종사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정보수의 기준, 보수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표준보수지침(이하 “표준보수지침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고, 이를 보급·권장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보수지침의 마련을 위하여 시중 노임 단가,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한 적정보수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.

③ 콘텐츠사업자와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표준보수지침의 구체적 내용 및 작성 방법, 제2항에 따른 적정보수금액의 조사·산정의 기준 및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의3(안전·보건에 관한 조치) ①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의4(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(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)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.

1. 콘텐츠산업 종사자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경우
2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3.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
제25조의5(실태 조사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
2. 표준보수지침 준수 실태
3. 제25조의2에 따른 적정보수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
4. 제25조의3에 따른 콘텐츠산업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및 안전·보건조치 현황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

장, 콘텐츠사업자 및 콘텐츠산업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· 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5조(기본계획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“콘텐츠산업 종사자”란 콘텐츠의 제작·유통 등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콘텐츠산업 종사자가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 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</u></p> <p>제5조(기본계획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<u>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</u></p>

11. (생략)

④ (생략)

제24조(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

4. (생략)

제25조(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) ① (생략)

<신설>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4.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사업자 또는 콘텐츠제작자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임금, 근로시간,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제25조의2(표준보수지침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

종사자가 적정한 보수(콘텐츠 산업 종사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정보수의 기준, 보수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표준보수지침(이하 “표준보수지침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고, 이를 보급·권장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보수지침의 마련을 위하여 시중 노임단가,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한 적정보수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.

③ 콘텐츠사업자와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표준보수지침의 구체적 내용 및 작성 방법, 제2항에 따른 적정보수금액의 조사·산정의 기준 및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25조의3(안전·보건에 관한 조

치) ①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의4(임금체불 등에 관한

제재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(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)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.

1. 콘텐츠산업 종사자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경우

<신 설>

2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
3.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
제25조의5(실태 조사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

2. 표준보수지침 준수 실태

3. 제25조의2에 따른 적정보수 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

4. 제25조의3에 따른 콘텐츠산업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및 안전·보건조치 현황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콘텐츠사업자 및 콘텐츠산업 관련 기관·

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